

# 보도자료

국민이 행복한 사회, 노동이 행복한 세상!  
은수미의 희망정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5길 15, 15층 | 전화: 02-550-0000 | 팩스: 02-550-0001

www.hopesumi.com

@hopesumi

/hopesumi

2014. 10. 22. (총 6쪽)

## 해수부는 선원이 아니라고, 고용부는 배를 타고 있다고, 비선원 근로자들 근로감독 사각지대 방치

### 국무회의, 선원법 시행령 개정, 비선원 근로자 범위 확대

### 비선원 근로자 수 11,096명, 전체 종사자 중 57.3%로 추산

### 고용부, 선박탑승 비선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지난 4년간 '0건'

### 은수미 의원,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계획 마련되어야

- 지난 4월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별첨 참조). 당시 정부는 '선원이 아닌 자'를 명문화 하고 예선업의 필수 승선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다만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 직후, 개정 의결된 시행령 제2조의 시행일자를 '미정'으로 전환하여 아직까지 실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음.
- 이날 가결된 「선원법 시행령」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는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선원이 아닌 자'의 범위를 명문화 하는 조항으로 그 동안 실제 해양수산부가 선원근로감독 대상에서 예외(선원법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로 해 왔던 '비(非)선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임.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초빙연예인, 운송근로자 등의 직종종사자가 비선원으로 분류되면서 이미 매년

저, 사무직원, 아르바이트와 같이 비선원으로 분류 오던 직종 종사자까지를 포함해 비선원 선박근로자의 범위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밝힘.

<선원과 비선원의 구분>



- 은수미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해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받아 비선원 선박탑승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 4년간 해운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은 전부 해운사의 본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부산청 4건, 광주청 2건). **선박탑승 근로자에 대한 일반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근로감독은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함.**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비선원 선박탑승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은 해수부 선원근로감독관 관할이라고 임의로 간주하면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해 온 점을 확인함.**

- 아울러 해양수산부 소속의 선원근로감독관의 경우 근로감독의 대상이 '선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들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은수미 의원은, 비선원 선박근로자들은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법에 따른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

는지 여부를 항시 감독해야 하는데, 그간 정부의 부처까지 책임을 넘기면서 사실상 비선원 근로자들은 근로감독 사각지대에서 놓여있게 되었다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임방기라고 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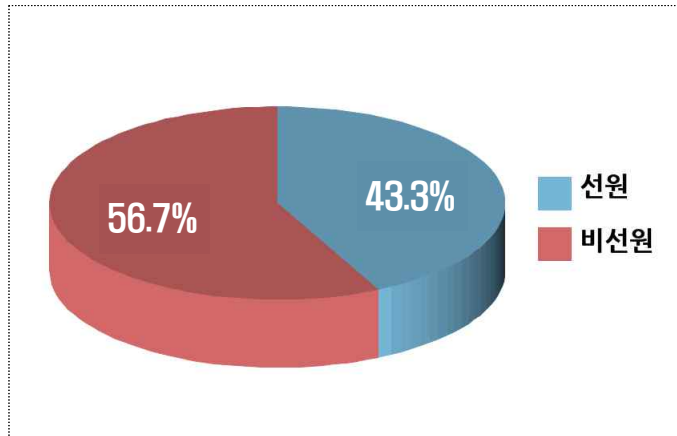
- 은수미 의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2012년 현재 국내 운수업 중 수상운송업(5인 이상, 연간 평균)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19,096명이고, 같은 시기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내항선 취업선원은 총 8,269명으로, 총 종사자 중 선원을 제외해 봤을 때, 비선원 근로자 수는 **약 10,827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56.7%** 가량으로 추산되고, 2013년 현재 전국에 등록된 해운사가 **총 3,397개사**(등록선박 수 **8,267척**)라는 산업규모로 봤을 때,

그간 이들에게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등 법률이 정한 근로조건이 적절히 보장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든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논평함.

<수상운송업(내항) 종사자 현황(2012)>

[은수미의원실 자체분석]

	종사자 수	비율
선원*	8,269명	43.3%
비선원**	10,827명	56.7%



\*해양수산부 한국선원통계(2012년) 내항선 취업 선원(선원수첩보유자 기준)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12년) 운수업 중 수상운송업 종사자(5인 이상, 연간평균)에서 선원수첩 보유자수를 뺀 값

- 은수미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3년도에 선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원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처리 결과를 근거로, 내항선 업종분야에서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연간 19건, 총 4,700만원, 신고사건을 통해 연간 290건, 총 15억 7700만원의 임금체불 등의 위법행위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선원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면 비선원 근로자들에 대한 위법행위도 그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될 수 있고, 따라서 사실상 법의 보호망 바깥에 방치된 비선원 선박탑승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긴급한 감독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함.

- 은수미 의원은, 지난번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탑승했던 비선원 근로자들도 일반 탑승객과 함께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13명 중 7명 사망), 당시 사건으로 선박탑승 비정규직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절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함.
- 은의원은, 선박에 탑승한 비선원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감독하는 업무를 기존 선원근로감독관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지금의 법제도 조건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예방토록 하고, 부처간 업무조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당 부처들 간의 논의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갖추어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아울러 은수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 정부의 규제완화의 부정적 효과가 현실에서 보통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함. <끝>



제18245호 2014. 4. 15.(화)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5304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4
- 대통령령제25305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 5
- 대통령령제2530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17
- 대통령령제25307호(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 ..... 19
- 대통령령제2530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 19
- 대통령령제25309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
- 대통령령제25310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2
- 대통령령제25311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8

**【부 령 령】**

- 산업통상자원부령제5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5

**【고 시】**

- 금융위원회고시제2014-10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40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8호(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직합등록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 43
- 외교부고시제2014-1호(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 45
- 국방부고시제2014-85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51
- 국방부고시제2014-86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51
- 국방부고시제2014-87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 52
- 국방부고시제2014-88호(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 52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2호(상주~영덕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 53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86호(서울~양양<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토지세목) ..... 61
-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96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72
- 산림청고시제2014-39호(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 79
- 중소기업청고시제2014-16호(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 80
- 중소기업청고시제2014-19호(지역특화발전특구 지형도면) ..... 81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만 일정한 요건하에 그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 신규 공장의 유치가 불가능하고 기존 공장의 증설 또는 업종변경도 제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산업단지의 경우 그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범위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대통령령 제25310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2.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기술자 및 작업원
3. 「도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
4.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 사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5.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
6. 선박에서의 공연(公演)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연예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